#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021-49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일

제 출 자: 강서 구청장

##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개정이유

「지방일괄이양법」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구에서 동이나 보건소로 재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, 그간의 상위법령 제·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시행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신설
  -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에 관한 사무
  -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
- 나.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 신설
  -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등 13개 사무
- 다. 사무명,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
  -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등 9개 사무
- 라. 상위법령 개ㆍ폐에 따른 사무의 삭제
  -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
- 마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  - 2)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조
  - 3)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제21조, 제43조
    - 모자보건법 제12조, 의료기기법 제16조·제33조·제36조
  - 4)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, 제6조의3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: 생략
  - ※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(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)
  - 2) 규제사전심사: 해당 없음
  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 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#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,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임의 기준 등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집행사무,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,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3조(지휘감독 및 책임)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,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

- 제4조(사전승인 등의 억제)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 기관에게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- 제5조(위임사무)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,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  - ② 별표에서 허가·인가·신고·등록·면허·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동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부터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# [별표]

# 위 임 사 무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		
가. 무보직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·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, 구의회 소속 별정직·임기제공무원과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3조의 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임용		구 의 회 사 무 국 장
나. 무보직 6급 및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	○「지방공무원법」제6조제2항	보 건 소 장
다.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	○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제6조	구 의 회 사 무 국 장
2. 매장·화장 및 개장의 신고	○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	동 장
3. 종량제 실시 제외대상 대형폐기물의 수집· 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	○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29조제2항	동 장
4.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 건 소 장
가. 감염병의 표본감시	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	
나. 감염병 역학조사	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	
다. 예방접종의 실시 및 공고	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제25조, 제26조	
라. 예방접종증명서 발급	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	
마.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	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	
바.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	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	
사.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	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	

사 무 명	근거법령			기된	<u></u>
5.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	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			소	장
가. 신고 및 변경신고	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				
나. 휴업·재개업 및 폐업 신고	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3조				
다. 시정명령·영업정지 및 영업소의 폐쇄 따른 청문	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제59조, 제75조				
라. 서류의 제출·검사 등	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7조				
6.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	○「결핵예방법」제5조				
나.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	○「결핵예방법」제10조, 제10조의2				
다. 결핵검진	○「결핵예방법」제11조				
라.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명령 및 취소	○「결핵예방법」제13조, 제14조				
마. 입원명령	○「결핵예방법」제15조, 제15조의2				
바. 입원명령등을 받은 결핵환자등의 생활 보호	○「결핵예방법」제16조, 제16조의2				
사. 전문인력 배치	○「결핵예방법」제18조				
아.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	○「결핵예방법」제19조				
7. 피임약제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	○「모자보건법」제12조제2항				
8.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산후조리업의 신고	○「모자보건법」제15조				
나. 산후조리업의 승계	○「모자보건법」제15조제3항				
다. 산후조리업의 폐업·휴업 및 재개신고	○「모자보건법」제15조제10항				
9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제공자 등록	○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				
나. 제공자의 휴·폐업	○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				
다. 제공자의 지위승계	○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2조				
10.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					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			<u></u>
가.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	○「약사법」제20조제2항	보	건	소	장
나. 약국폐업·휴업·재개신고	○「약사법」제22조				
다. 의약품조제·판매장소 예외승인	○「약사법」제23조제2항, 제50조제1항				
라. 약국제제 등의 제조품목 신고	○「약사법」제41조제1항				
마. 보고와 검사, 시정명령, 업무개시명령, 폐기명령, 개수명령, 관리자 변경명령 등	○「약사법」제69조부터 제75조까지				
바.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및 청문	○「약사법」제76조				
사. 약사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	○「약사법」제78조				
아.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·징수	○「약사법」제81조, 제98조				
자. 등록증 등의 반납·갱신 및 재발급	○「약사법 시행규칙」제52조, 제55조, 제57조				
차.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	○「약사법」제21조의2				
카. 시정명령	○「약사법」제69조의4, 제75조의2				
11. 의료기기 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의료기기판매업의 신고·변경·휴업 및 폐업	○「의료기기법」제17조,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7조				
나. 의료기기수리업 등의 신고·변경·휴업 및 폐업	○「의료기기법」제16조,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5조				
다. 보고와 검사 등	○「의료기기법」제32조				
라. 폐기명령 등	○「의료기기법」제34조				
마.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	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				
바. 청문	○「의료기기법」제39조				
사.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·징수	○「의료기기법」제38조, 제56조				
아.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	○「의료기기법」제40조				
12.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및 조산원 개설신고의 처리(이하"의원 등"이라함)	○「의료법」제33조제3항				
나. 의원 등의 변경신고수리	○「의료법」제33조제5항				
다. 의료법인·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사전협의	○「의료법」제33조제9항				
라. 의원 등의 휴업, 폐업의 신고수리, 의료업의 폐업·휴업 신고수리	○「의료법」제40조				
마. 업무개시명령	○「의료법」제59조제2항				
바. 보고와 업무검사 등	○「의료법」제61조				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			<u></u>
사. 의원 등에 관한 시정명령, 영업정지 명령·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	○「의료법」제63조, 제64조, 제84조				
아. 과징금 부과 및 징수	○「의료법」제67조				
자. 과태료 부과 및 징수	○「의료법」제92조				
차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사무(신고, 지도감독)	○「의료법」제37조,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」 제3조, 제16조				
카. 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, 지도감독	○「의료법」제38조,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제2조				
13. 접골, 침구시술소 개설·변경·휴·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·명령과 행정처분 등	○「의료법」제81조	보	건	소	장
14.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·변경·휴·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·명령과 행정처분 등	○「의료법」제82조		건	소	장
15.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개설등록	○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				
나. 폐업 등의 신고수리	○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3조				
다. 보고와 검사 등	○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				
라. 시정명령, 영업정지, 개설등록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	○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, 제24조, 제26조				
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	○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33조				
16. 치과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개설등록	○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2				
나. 폐업 등의 신고수리	○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3조				
다. 보고와 검사 등	○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				
라. 시정명령, 영업정지, 개설등록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	○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, 제24조, 제26조				
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	○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33조				
17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마약류감시원의 임명	○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8조				
나.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	○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				

사 무 명	근거법령	2	누임	기-	<u></u>
18.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	○「약사법」제45조제1항				
나. 도매업무관리자의 신고 수리	○「약사법」제45조제6항				
다. 의약품도매업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	○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				
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	제62조				
라. 보고와 검사 등	○「약사법」제69조				
마. 업무개시 명령 등	○「약사법」제70조				
바. 폐기명령 등	○「약사법」제71조				
사. 개수명령	○「약사법」제74조				
아.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	○「약사법」제76조, 제77조				
자. 허가증 등의 반납·갱신 및 재발급	○ 「약사법 시행규칙」제52조, 제55조, 제57조				
차.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·징수	○「약사법」제81조, 제98조				
카. 폐업·휴업·업무재개 신고	○「약사법 시행규칙」제41조				
19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	○「약사법」제44조의2				
나. 폐업·휴업·재개업 신고	○「약사법」제44조의2				
다. 지위승계	○「약사법」제44조의5				
라. 보고와 검사, 폐기명령 등	○「약사법」제44조의6, 제69조, 제71조				
마. 등록취소 및 청문	○「약사법」제76조의3, 제77조				
바. 과태료 부과	○「약사법」제98조				
사. 등록증 등의 반납·갱신 및 재발급	○「약사법 시행규칙」제52조, 제55조, 제57조				
20.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	○「의료법」제35조제1항	보	건	소	장
21.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(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· 정신병원)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	건	소	장
가. 보고와 업무검사 등	○「의료법」제61조				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	.임기	]관
나. 시정명령, 영업정지명령,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	○「의료법」제63조, 제64조, 제84조			
22.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	건 _	소 장
가.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34조			
나.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31조, 제35조			
다.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지정취소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3			
라. 구급차 등의 운용 통보(신고) 등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			
마. 구급차 운용의 정지·말소등록	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3, 제45조			
바.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확인요청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45조			
사. 구급차 운행 연한 연장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46조의2			
아.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47조의2			
자.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·감독 및 시정명령·정지명령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50조			
차. 의료기관,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(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), 업무 정지	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55조제3항			
카. 청문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56조			
타. 과징금 부과 및 징수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57조			
파. 과태료 부과 및 징수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62조			
하.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(종합병원 제외)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	○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35조의2			
23.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	건 _	소 장
가. 신고 및 변경신고,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	○「의료법」제16조,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제7조			
나.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	○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제9조			
다. 지도 및 보고	○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제11조			
24.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	- <u> -  -  -  -    -  -  -  -  -  -  -  -  -</u>			
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		보	건 _	소 장
가.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환자 유치행위 사전승인	○「의료법」제27조제3항			

사 무 명	근거법령			수임기관			
25.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		보	건	소	장		
가. 응급의료 업무 종사 명령 등	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1항						
26. 응급장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	건	소	장		
가. 응급장비 설치 신고	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47조의2제2항						
나. 신고한 응급장비 양도, 폐기, 이전 등 신고							
27.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동			장		
가.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	○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						
	제6조의2						
나.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	○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						
	제6조의3						

#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, 제9조제4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#### 4. 작성자

성 명	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정 걸 (담당: 행정7급 김태희)
연락처	02-2600-6317

###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#### □ 자치법규명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# □ 제안이유

「지방일괄이양법」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구에서 동이나 보건소로 재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, 그간의 상위법령 제·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

#### 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시행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신설
- 나.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 신설
- 다. 사무명,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
- 라. 상위법령 개ㆍ폐에 따른 사무의 삭제
- 마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
#### 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자치구에 이양된 사무 및 그간의 위임관계 변동이 있는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,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.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평 가 번 호	2021 - 22						
자치법규명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		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 급	행정7급	그	성 명	이경민	
입안주무부서	기획예산과	통보(조기	치)일	·	2021. 5.	14.	
괸	검토결과 조치사형			- 항			
개정안 전부		원안 동	-의		-		

성별영	향평가서	제출 제	외 통도	브 확인서		
관리번호	2021A서울강	서023				
정 책 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				
	기관명		서울특별시 2	강서구		
소관부서	부서명	기획예산과				
	담당자명	김태희	전화번호	02-2600-6317		
	기관명		서울특별시	강서구		
담당부서	부서명		가족정책	과		
	담당자명	최은영	전화번호	02-2600-6762		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1년 05월 1	3일	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1년 05월 1	7일				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05월 17일

### 붙 임 관계 법령

#### ■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 · 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 :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- 제3조(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· 인가 ·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,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 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(이하 "행정권한"이 라 한다)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, 다른 행정기관의 장,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.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,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 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,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3. 22.〉

#### ■ 지방일괄이양법

제21조(「모자보건법」의 개정)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3조(「의료기기법」의 개정)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■ 모자보건법

제12조(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)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.

#### ■ 의료기기법

제16조(수리업의 신고) 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(이하 "수리업자"라 한다)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· 제조인증 · 제조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 · 수입인증 · 수입신고를 받은 자가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.

#### 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
제6조의2(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)

-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,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.
-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⑥ 제1항,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6조의3(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)

-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,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.
-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